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민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84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0.

발 의 자:최민희·김원이·노종면

정동영 • 조인철 • 김우영

박수현 • 박지원 • 한민수

박해철 • 황정아 • 박민규

김 현 · 이훈기 · 박용갑

백승아 • 황명선 • 이정헌

문금주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9명 이사는 교육부장관 추천 1인과 교육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, 사장 역시 방송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 공사 운영 및 사장의 임명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,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 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,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 원들이 2명, 교육단체가 1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.

특히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 후보

를 임명제청하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9조, 제13조, 제14조 및 제14조의2). 법률 제 호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"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받아"를 "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방송통신위원회에서"를 "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임명한다"를 "임명하되,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이사회는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사장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.

제13조제2항 중 "9명으로"를 "13명으로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

한다.

- 1.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
- 2.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명
- 3.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
- 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여야 하고, 공사는 「방송법」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.
- 1.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
- 2.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
- 3. 추천 이유
- 다만,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안건상 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.
- ⑨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

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한다.

- 제14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5의2. 사장·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
 - 5의3. 제14조의2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
-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4조의2(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 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②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을 경우 진흥 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 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 - ③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④ 이사회와 공사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며, 제3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.
 -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, 면접,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진흥회에 추천하여야 한다.
 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

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사 및 사장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이사회의 이사와 공사의 사장은 이 법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고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호 중 "사장ㆍ이사"를 "이사"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임원) ① (생 략)	제9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사장은 <u>방송통신위원회 위</u>	②제13조에 따른 이사
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	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
<u>를 받아</u> 임명한다.	
③ 감사는 <u>방송통신위원회에서</u>	③이사회의 제청으로
임명한다.	<u>방송통신위원회에서</u>
④ 부사장은 사장이 <u>임명한다</u> .	④ <u>임명하되,</u>
	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⑤ 이사회는 제14조의2에 따른
	사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사
	장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.
제13조(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)	제13조(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	②
임명하는 비상임이사 <u>9명으로</u>	<u>13명으</u>
구성한다.	<u>로</u>
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	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
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	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
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	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
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	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
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	위원회가 임명한다.
<u>한다.</u>	1.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
	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

<신 설>

④·⑤ (생 략)

⑥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단 추천하는 사람 5명

- 2.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사람 5명
- 3.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
 이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
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
 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
 명
- 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

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

 명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시 다음 각 호 에 따라 공정성 및 투명성 확 보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여야 하고, 공사는 「방송법」 제4조 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 로 정한다.
- 1.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
- 2.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
- <u>3. 추천 이유</u>
- <u>⑤</u>・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)
- <u>(7)</u> -----

서 신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⑦ ~ ⑨ (생 략)

제14조(이사회의 기능) ① 이사회 제14조(이사회의 기능) ① -----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• 의결한다.

1. ~ 5. (생 략) <신 설>

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안건상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 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 표자를 임명제청한다.
- ⑨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
① ~ ② (현행 제7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)

1. ~ 5. (현행과 같음) 5의2. 사장·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

<신 설>

6. ~ 12. (생 략)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 5의3.제14조의2의사장후보추천위원회구성과운영

- 6. ~ 12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의2(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추천위 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②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 회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을 경 우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 송사업자의 사장의 임기만료 9 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위원 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③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 위로 선정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이사회와 공사는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며, 제3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 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.
-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, 면접, 숙

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 의 복수 후보자를 진흥회에 추 천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차 부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이사회가 정한다.